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74
----------	-------

발의연월일 : 2025. 8. 20.

발의자 : 추경호 · 김위상 · 나경원

이달희 · 김상훈 · 성일종

이현승 · 정동만 · 박성민

김정재 · 서지영 · 김기현

권성동 · 이종배 · 권영진

고동진 · 최은석 · 박성훈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한도에 일정한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소득과 상관 없이 연간 300만원(자녀가 1명인 경우 3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을 “연간 300만원에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에 따른 금액(1명인 경우에는 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득공제금액은 <u>연간 250만원</u> (해 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 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⑩ ----- -----연간 300만원에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양가족에 따른 금 액(1명인 경우에는 50만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